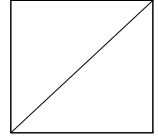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10. 22. (제 75 회)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출 연월일	2025. 10. 22.

1. 의결주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기준(이하 '3책5공') 적용대상에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3책5공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를 정하기 위함
- ※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8조 제21호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정하고자 함

2) 3책5공제도 개요

-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 (제한기준) 부처에서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를 참여 연구자로서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로 제한 가능
 -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적용/적용제외 판단)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 소관 부처에서 결정

3)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적용제외 가능과제(안)

3-1) 적용제외 기준 :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과제 연구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2) 적용제외 가능과제(안)

①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6년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②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③ 신규과제 중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기술사업화 정의 : 「기술이전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를 민간부분으로 이전·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D 과제

- ◆ (적용제외 요건) 사업목적, 사업의 성과지표 및 주요내용 등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였을 때 기술사업화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행주체가 공공기술 성과활용 기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업이거나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연구자) 및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이 공공기술을 수요기업(수요자 포함)으로 이전·사업화하는 과제
 - ①사업목적에 기술사업화, 창업, 제품화 등 명시 ②성과지표에 기술이전, 매출, 창업율 등이 포함 ③지원내용에 TRL(기술성숙도) 제고, 실용화(시험, 분석, 평가, 인증, PoC, 검증, 실증 등), 상용화, 시제품 제작, 기업성장지원 등 포함 ④이외 소관부처에서 기술사업화로 판단하는 과제
- ◆ (적용제외 비율) 부처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3책5공 면제 과제 수가 각 부처의 '26년 신규과제 중 15% 미만으로 되도록 제한
 - '26년 상반기에 각 부처의 기술사업화 관련 3책5공 면제 과제수를 조사하여 적용제외 비율 등을 추가 검토 추진
-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 3책5공제도 적용제외 과제 비교 >

'25년 적용제외 과제('24.10월 운영위)	'26년 적용제외 과제(안)
1) 연평균 6천만원 이하	1) (좌동) 연평균 6천만원 이하
2) 동일 과제를 다수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과제	2) (좌동) 동일 과제를 다수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과제
-	3) (신설)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

4. 참고사항

- ☐ 안전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25.8.4.~18.)
- ☐ 제54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사전검토('25.9.26)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202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	3
III. 향후일정	4
[참고 1] 기술사업화 R&D 사업의 정의 및 기준	5
[참고 2] 동시수행과제 수 관련 법령	7
[참고 3] 동시수행과제 수 제도 운영 절차	10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이하 ‘3책5공’) 적용 대상에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3책5공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를 정하기 위함
 -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8조 제21호에 따라 매년 반복적 안전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정하고자 함

2. 3책5공 제도 개요

-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 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 (제한기준) 3책5공 원칙하에 부처에서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를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로 제한 가능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적용/적용제외 판단) 3책5공 적용 여부는 과제 소관 부처에서 결정
 - (부처) 사업 예고 또는 과제 공고 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를 고지하고, 과제 선정·협약 시 참여연구자의 3책5공 해당 여부 확인
 - ※ 3책 5공을 초과하는 연구자는 협약이 불가하도록 IRIS 시스템 개선('24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 관리
 - (연구자) 3책5공 해당 시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과제 조정

< 3책5공제도 적용제외 현황 >

일시	적용제외 과제
'21. 2월 운영위 '21.10월 운영위	①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과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②코로나19 대응 관련 과제 (전체 부처) ③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과제 (전체 부처) ④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된 과제 (전체 부처) ⑤연평균 5천만원 이하
'22. 8월 운영위	①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과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②코로나19 대응 관련 과제 (전체 부처) ③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과제 (전체 부처) ④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된 과제 (전체 부처) ⑤연평균 5천만원 이하 ⑥동일과제를 다수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과제
'23.12월 운영위	①연평균 6천만원 이하 ②동일과제를 다수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과제
'24.10월 운영위	①연평균 6천만원 이하 ②동일과제를 다수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과제

3. 추진경과

- ☐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기준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25.8.4~18)
- ☐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부처 의견 수렴('25.9.22~25)

Ⅱ.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1.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적용제외 기준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제6조

*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 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적용제외 기준)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는 과제

- ①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이 있는 과제
- ② 소규모 과제 등 소관부처에서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2.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26년도 적용제외 과제(안)

①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6년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②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 ·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③ 신규과제 중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참고1)

※ 기술사업화 정의 : 「기술이전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를 민간부분으로 이전·
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D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사업목적, 사업의 성과지표 및 주요내용 등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였을 때 기술사업화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행주체가 공공기술 성과활용 기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업
이거나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연구자) 및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이 공공기술을 수요기업(수요자 포함)으로 이전·사업화하는 과제
- ①사업목적에 기술사업화, 창업, 제품화 등 명시 ②성과지표에
기술이전, 매출, 창업율 등이 포함 ③지원내용에 TRL(기술성숙도)
제고, 실용화(시험, 분석, 평가, 인증, PoC, 검증, 실증 등), 상용화,
시제품 제작, 기업성장지원 등 포함 ④이외 소관부처에서 기술
사업화로 판단하는 과제

◆ (적용제외 비율) 부처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3책5공 면제 과제
수가 각 부처의 '26년 신규과제 중 15% 미만으로 되도록 제한

- '26년 상반기에 각 부처의 기술사업화 관련 3책5공 면제 과제수를
조사하여 적용제외 비율 등을 추가 검토 추진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3. 부처/연구기관 후속조치 사항

- ☐ (부처) 사업 예고 또는 과제 공고 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 고지
-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 주기적 관리

Ⅲ. 향후 일정

- ☐ 운영위 심의 이후 3책5공 적용제외 과제 공개('25.10월)

참고 1 3책5공 제외대상 인 기술사업화 R&D의 정의 및 기준

□ 기술사업화 R&D 정의

○ (정의) 「기술이전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를 민간부분으로 이전·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D 과제

○ (선별 기준) 예산요구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①수행주체, ②과제 목적, ③지원내용, ④기술 성숙도 및 ⑤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① (필수항목)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과제

- 기업이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
- 비영리기관의 연구기관(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전담 조직이 수요기업(수요자 포함)으로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를 이전·사업화·창업하는 과제
- 연구자와 수요기업(수요자 포함)의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공동과제

② 과제목적에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시장진입, 제품화 등 명시

③ 지원내용에 기업성장지원, 창업준비(BM 개발 및 기술검증 등), 실용화(시험, 분석, 평가, 인증, 실증 등), 시제품 제작, 상용화 등 포함

④ 기술성숙도의 경우 TRL(기술성숙도) 6 이상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⑤ 성과지표에 매출, 창업률, 기술이전, 인증 획득, 투자유치 등이 포함

⑥ 이외 소관부처에서 기술사업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과제

☞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 '26년 전체 신규과제 중 동 안전에 따라 3책5공이 제외되는 기술사업화 과제는 15%* 미만으로 설정

* '25년 IRIS(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 대비 3책5공 제외대상 과제수 비율(약 14%)을 고려하여 산정

☞ '26년에 기술사업화 관련 부처별 3책5공 면제과제 수를 조사하여 적용제외 비율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

참고 2 동시수행 과제 수 관련 법령

연구개발 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u>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u>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할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3조(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 ① 영 제64조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하 “동시수행가능과제수”라 한다)를 제한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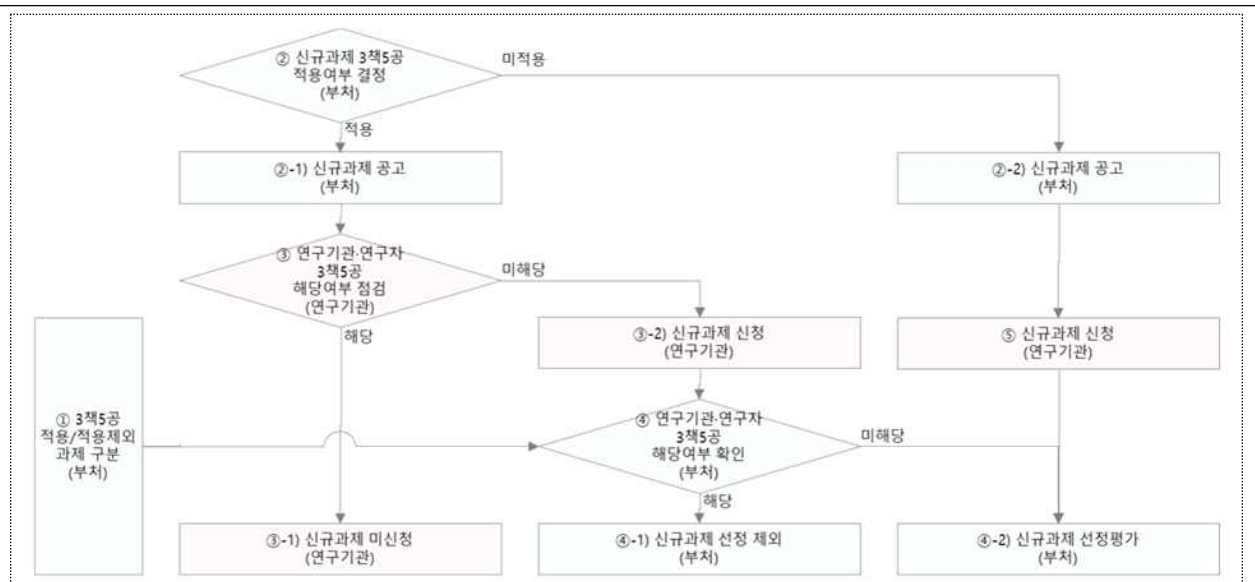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대하여는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3

3책5공 제도 운영 절차



- ① (부처) 3책5공 적용/적용제외 과제 구분 : 부처는 소관과제별로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구분
- ② (부처) 3책5공 적용여부 결정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
 - ②-1 (부처) 신규과제 공고 :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할 경우 공고 시 3책5공 적용과제임을 명시
 - ②-2 (부처) 신규과제 공고 :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고 시 3책5공 적용제외 과제임을 명시
- ③ (연구기관) 3책5공 해당여부 점검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의 3책5공 해당 여부를 점검
 - ③-1 (연구기관) 신규과제 미신청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규과제 미신청
 - ③-2 (연구기관) 신규과제 신청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규과제 신청
- ④ (부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확인
 - ④-1 (부처) 신규과제 선정 제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서 제외
 - ④-2 (부처) 신규과제 선정평가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포함
- ⑤ (연구기관) 신규과제 신청 : 연구기관은 3책5공을 적용하지 않는 신규과제에 대해 과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담당과장	김도경 과장
담당자	김희선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957 E-mail : kimhs5023@korea.kr